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안내장



※ 모집종사자는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시자는 KB라이프생명과 외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KB라이프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

가입안내

상품 구성

주계약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보증형)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미보증형)
제도성특약	지정대리 청구서비스특약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납입주기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 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연금개시나이		45세 ~ 85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보험료납입주기		월납

주1)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5년납	10년	
7년납	8년	0세 ~ MIN [연금개시나이~ 15, 70] 세
10년납	5년	

※ 최소거치기간: 보험료 납입완료후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최소기간

주2)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보험료(1구좌당)	최대보험료(1구좌당)
5년납	0세 ~ 70세	30만원	
7년납	0세 ~ 70세	20만원	100만원
10년납	0세 ~ 70세	10만원	

[※] 구좌란 보험금과 보장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의 단위를 의미하며, 구좌당 최소·최대 보험료 등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납입보험료

- (1)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납입 가능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선납 포함)의 200%를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가능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와 같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200%를 한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 (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재납입하는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 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일 또는 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80%범위 이내에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구좌 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5)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며, 인출된 금액은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6)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최저사망적립액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 사망시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형에 한함)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라 함은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에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보증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 =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 X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트리플 레벨업	트리플 레벨업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보증시점	보증 기준금액	5년납	7년납	10년납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00%	100%	100%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보증시점 전일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	130%	125%	120%	
연금개시시점)년 경과시점의 트리플 리 }개시전 보험기간」-10(\		

단,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 마다 각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 하며,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관한 사항

- (1) 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트리플 레벨업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형에 한함)에 의한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최저한도로 하여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을 구합니다.
- (2) 미보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은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더라도 원 복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금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보증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월 <mark>40</mark> 만원(36회 지급)

주1)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터 3년을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봅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계약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생활설계자금선택비율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님대	TIZ 110	TI 7 7 04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활설계자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종신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주1)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 이란 생활설계자금의 인출을 위해 계약자가 회사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0%로 하며, 이 경우 생활설계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고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할 경우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합니다.

- 주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중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주3) 종신연금형(100세 보증)은 "100세-연금개시나이" 횟수만큼 연금연액이 보증지급됩니다.
- 주4)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해당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각 확정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주5)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 주7)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8)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각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본보 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고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10) 상속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상속연금형의 연금액 발생분(납입후계약관리비용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증형

기준: 주계약, 남자 40세, 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2.75%)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 급률 (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600	104	17.5%	106	17.8%	106	17.8%
2년	1,200	311	25.9%	318	26.5%	318	26.5%
3년	1,800	516	28.7%	531	29.5%	531	29.5%
4년	2,400	721	30.1%	746	31.1%	746	31.1%
5년	3,000	925	30.8%	964	32.1%	964	32.1%
6년	3,600	1,125	31.3%	1,183	32.9%	1,183	32.9%
7년	4,200	4,200	100.0%	4,200	100.0%	4,200	100.0%
8년	4,800	4,727	98.5%	4,805	100.1%	4,805	100.1%
9년	5,400	5,251	97.3%	5,417	100.3%	5,417	100.3%
10년	6,000	7,200	120.0%	7,200	120.0%	7,200	120.0%
15년	6,000	6,838	114.0%	7,547	125.8%	7,547	125.8%
20년	6,000	6,494	108.2%	7,912	131.9%	7,912	131.9%

- 주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유지비용, 보증비용, 해약공제금액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2)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주3)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5년 8월) 공시이율은 2.5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10년이상은 연복리 0.5%입니다.
- 주4) 상기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제 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8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주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8)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 주9) 상기 환급률은 트리플 레벨업 보증을 반영한 금액이며, 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 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해드리므로 연금개시시점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은 보증되기 전 금액입니다.
- 주10)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더라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미보증형

기준: 주계약, 남자 40세, 미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2.75%)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 급률 (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600	475	79.3%	480	80.0%	480	80.0%
2년	1,200	1,059	88.3%	1,076	89.7%	1,076	89.7%
3년	1,800	1,648	91.6%	1,687	93.8%	1,687	93.8%
4년	2,400	2,243	93.5%	2,313	96.4%	2,313	96.4%
5년	3,000	2,843	94.8%	2,954	98.5%	2,954	98.5%
6년	3,600	3,441	95.6%	3,610	100.3%	3,610	100.3%
7년	4,200	4,043	96.3%	4,282	102.0%	4,282	102.0%
8년	4,800	4,634	96.6%	4,956	103.3%	4,956	103.3%
9년	5,400	5,230	96.9%	5,646	104.6%	5,646	104.6%
10년	6,000	5,830	97.2%	6,353	105.9%	6,353	105.9%
15년	6,000	5,948	99.1%	7,156	119.3%	7,156	119.3%
20년	6,000	6,069	101.2%	8,062	134.4%	8,062	134.4%

주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유지비용, 보증비용, 해약공제금액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2)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5년 8월) 공시이율은 2.5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10년이상은 연복리 0.5%입니다.

주4) 상기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주5)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6)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제 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8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주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8)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연금지급액 예시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보증형

기준: 주계약, 남자 40세, 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만원

연금선택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75% 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8,400	8,400	8,400
	20년보증	252	348	348
종신연금형	100세보증	220	316	316
	기대여명보증	250	346	346
	5년 확정형	1,679	1,746	1,746
하저여그성	10년 확정형	850	927	927
확정연금형	15년 확정형	574	655	655
	20년 확정형	435	520	520
	연금액	41	202	202
상속연금형	피보험자 사망시 일시금 지급	8,358	8,195	8,195

-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주1) 상기 예시금액은 2025년 8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5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2)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3)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주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속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5)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8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7)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 주8)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 반영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9) 연금개시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금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보증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액 예시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미보증형

기준: 주계약, 남자 40세, 미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만원

연금선택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75% 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6,069	8,062	8,062
	20년보증	182	334	334
종신연금형	100세보증	159	303	303
	기대여명보증	180	332	332
	5년 확정형	1,213	1,676	1,676
하지여그처	10년 확정형	614	889	889
확정연금형	15년 확정형	414	629	629
	20년 확정형	314	499	499
	연금액	29	194	194
상속연금형	피보험자 사망시 일시금 지급	6,039	7,865	7,865

-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주1) 상기 예시금액은 2025년 8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5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2)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3)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주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속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5)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8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7)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 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3대 기본원칙 지키기(품질보증해지) 등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 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예시, 알아두실 사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3% 입니다. 단,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릅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 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계약자와 관련된 사항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한 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로 인한 불이익 등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유의사항

보험 리모델링이라 불리는 승환,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는 인수거절, 원금 손실 가능성, 보장 범위의 감소, 사업비 중복 부담,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한 불이익 여부와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및 유의사항 등 "보험계약 비교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1588-3374

■ 생명보험협회: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5

[분쟁조정]

■ 당사안내: 1588-3374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www.klia.or.kr







